

第121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 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	9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	11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 위한 條例廢止條例(案) .....	13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 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	15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20面

###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의 안	867
번 호	

제출년월일 : 2002. 5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 1. 개정이유

- 동기능전환 이후 주민문화복지센터를 개설 운영한 결과 자치단체·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보완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통해 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정(안 제4조)
- “사용료 등은 동장이 징수”를 “시설 등 사용료는 동장이, 프로그램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로 개정(안 제10조)
- “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을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 구성”으로 개정(안 제17조)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17조)
-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공개” 신설(안 제17조)

3. 개정근거

- 행정자치부 자제13101-141(2002. 3. 7)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안)
- 서울시 행정13101-1166(2002. 3.12)호, 1·2단계 동기능전환 보완지침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①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①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별 표]

사용료 등(제10조관련)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단 위	면 적	상한금액	비 고
사용료	1시간	50㎡미만	10,000원	부대시설포함
		50㎡이상 ~ 100㎡미만	15,000원	
		100㎡이상 ~ 150㎡미만	20,000원	
		150㎡이상 ~ 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수강료	월	-	30,000원	1인 1프로그램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 분	감면비율	대 상	비 고
사용료 및 수강료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li> <li>◦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li> <li>◦ 저소득 모·부자가정</li> <li>◦ 등록된 장애인</li> <li>◦ 소년·소녀가장</li> </ul>	
사용료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li> <li>◦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li> </ul>	

2.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의안 번호	868
----------	-----

제출년월일 : 2002. 5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폐지이유

-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여 징수하던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제도가 1999. 1. 21 관광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어 관광진흥법시행령으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됨에 따라 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폐지

3. 폐지근거

-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99. 1. 21 법률 제5654호)
-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99. 5. 10 대통령령 16295호)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870
----------	-----

제출년월일 : 2002. 5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2001.5.24.법률제647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명칭변경등 개정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이 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함(안 제명)
-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 대상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3조)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4, 제5조, 제6조, 제7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분리하고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
- 대불금의 상환 등에 관한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대불금 결손처분에 관한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5조에, 의료보호기금결산에 관한 보고 조례는 의료급여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각각 명시되어 현행조례를 삭제함(조례 제8조, 제9조, 제9조 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2001.5.24.법률제6474호),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여부 : 필요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하고,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인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인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8조 , 제9조 내지 제9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의안 번호	871
----------	-----

제출년월일 : 2002. 5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폐지사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 국민건강보험법(1999.2.8 법률 제5854호)의 제정으로 동조례의 상위법인 구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2000.7.1)되어 존치 실익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1989.5.6 조례 제82호) 전문 폐지

3. 폐지근거

- 국민건강법 부칙2조(2000.7.1)에 의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폐지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율위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8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율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872
----------	-----

제출년월일 : 2002. 5.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 구성·조직 기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기존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조례에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등 사항을 삽입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전문 개정
-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
-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개정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청소년보호법제47조, 청소년기본법제22조

4. 예산수반사항 : 2002년도 예산편성

5. 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과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①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구의회 의원,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 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4조(기능 및 임무)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2.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3.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

7.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③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 및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

제6조(임기) ①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자 및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표창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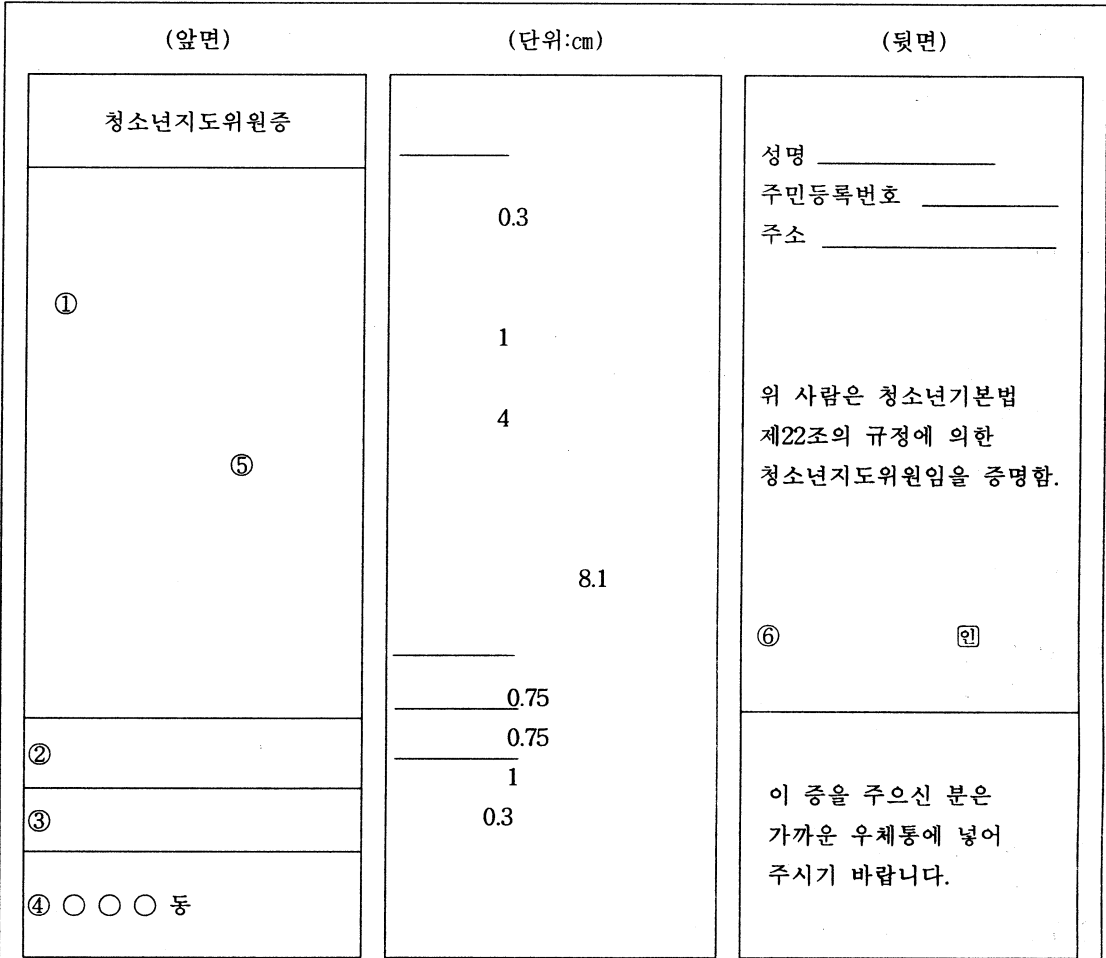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활동 중인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11조 관련)



49×7.5

0.3	1.7	3. 20. 3
-----	-----	----------

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sup>2</sup>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873
----------	-----

제출년월일 : 2002. 5.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무인자동제어 이동식 화장실 설치계획(구청장방침:청행91000-467-2001.12.14)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한 무인자동제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6조2항(사용료) 신설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경우 200원 이내의 사용료 징수

3. 개정근거

- 무인자동제어 이동식 화장실 설치계획(구청장방침:청행91000-467-2001.12.14)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용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경우 1회 200원 이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6조의2(사용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경우 1회 200원 이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